

##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

(이명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. 20.

발의자 : 이명녀, 김도운, 문희성,  
문기호, 김태욱, 강혜순,  
박경흠, 정재환, 홍영진,  
안영호

### 1. 제정이유

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(안 제4조 ~ 제5조)

라. 교육내용·교육대상 및 교육장의 운영(안 제6조 ~ 제8조)

마. 지원 및 홍보(안 제9조 ~ 제10조)

#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 4. 근거법규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13조

### 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3. 1. 11. ~ 1. 18.(8일간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심정지 환자”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,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,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심폐소생술”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 압박, 인공호흡,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.
3. “응급처치”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, 심장박동의 회복,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심폐소생술교육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교육 계획(이하 “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심폐소생술교육의 기본방향
2.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
3.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

4 (제252회-행정자치위제4차부록)

4.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사후관리)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육내용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
2.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
3.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
4.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제7조(교육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6조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구 소속 공무원, 통·반장,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6등
2. 자동심장충격기(AED) 관리책임자, 자원봉사자,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, 보육시설 종사자,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
3. 고위험군(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, 당뇨, 고혈압, 고지혈,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) 환자 및 그 가족
4.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교육장의 운영)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제10조(홍보)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나 구 공공시설 등을

활용하여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비밀의 준수)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근거법규

### □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)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,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
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# 2. 미첨부 사유

- 구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자료 작성 생략

#### 3. 작성자

- 소 속: 건강관리과
- 직 급: 지방간호서기
- 이 름: 손 유 익
- 연락처: 290-4325